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3. 3. 8.(수)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8일
전문위원 정 하 근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32
- 나. 발 의 자: 한상욱 의원 외 7명
- 다. 발의일자: 2023년 2월 24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2월 27일

2. 제안이유

현행 강서구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의회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8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60일 이내에서 연 2회 80일 이내로 20일 연장함(안 제3조)
- 나.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조 및 제4조제1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제54조(임시회),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의회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안전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회의 일수를 현행 60일에서 80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60일 이내에서 연 2회 80일 이내로 20일 연장함(안 제3조)
-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조 및 제4조제1호)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에서 정례회 회의일수를 현행 60일에서 80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현행 정례회 회의일수 60일을 80일로 늘리는 것에 법률적 문제는 없음. 다만, 회의 일수의 경우 의회 전체의 운영과 맞물리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 가결 후 정례회 기간에 맞추어 다른 의회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국 각 부서 간 사전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서울 자치구의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및 정례회 규정
[조례 기반, 2022.03.04.]**

NO	자치구명	정례회 총 일수 (1차, 2차 합산)	비고
1	강서구	60일 이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2	관악구	50일 이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3	은평구	60일 이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의회 기본 조례」제25조
4	영등포구	60일 이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의회 기본 조례」제19조
5	강북구	40일 이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6	구로구	55일 이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의회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7	강남구	50일 이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8	종로구	각 회기 당 20일 이상 (최소 4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의회 기본 조례」제13조
9	중구	50일 이내	「서울특별시 중구의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10	종랑구	60일 이내	「서울특별시 종랑구의의회 기본 조례」제25조
11	성북구	50일 이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의회 기본 조례」제23조
12	노원구	각 회기 당 40일 이내(총 80일 이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의회 기본 조례」제7조
13	강동구	45일 이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의회 기본 조례」제25조
14	용산구	50일 이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의회 기본 조례」제19조

15	동작구	60일 이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16	동대문구	50일 이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17	성동구	50일 이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18	광진구	50일 이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제7조
19	송파구	45일 이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20	도봉구	60일 이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
21	서초구	60일 이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7조
22	양천구	1, 2차 정례회만 규정 - 총 일수에 관한 규정은 없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3	마포구	50일 이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24	금천구	55일 이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25	서대문구	65일 이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 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